

1장 총칙

1조(목적) 협의회는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이하 ‘혁신지원사업’ 이라 함)에 선정된 대학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하여 참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함)라 한다.

제3조(활동)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참여 대학 간 상호 교류 협력 활동
2. 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운영,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
3. 혁신지원사업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 및 홍보에 관한 활동
4. 혁신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
5. 혁신지원사업 관련 정책연구, 세미나 및 교육연수 활동
6. 기타 본 협의회 운영 및 목적에 기여하는 제반 활동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① 협의회 회원은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전문대학(교)으로 한다.

② 회원대학의 혁신지원사업 **총괄사업책임자(사업단장)**가 회원대학을 대표하여 협의회에 참여한다.

③ 회원대학은 **총괄사업책임자(사업단장)**가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협의회가 진행하는 제반 사업에 대해 참여 및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의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협의회가 정하는 소정의 협의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3장 총회

6조(총회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운영계획의 승인
4. 기타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사항

제7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제4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④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

제9조(임원)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자격은 회원대학의 혁신지원사업 **총괄사업책임자(사업단장)**로 한다.

1. 회장 : 협의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무를 총괄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
3. 사무국장 : 회장의 지휘를 받아 협의회 사무전반을 담당
4. 감사 : 2인으로 구성하며,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
5. 권역별 회장·부회장 : 5개 권역별로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두며, 권역별 회장·부회장은 권역별 협의회 활동을 주관
6. <삭제>
7. 전문임원 : 5인 이내로 하며,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신설 0000.00.00>
8. <삭제>

9. < >

제10조(임원의 선출과 임명)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 사무국장, **전문임원** 등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③ 권역별 회장·부회장은 권역별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 감사, 권역별 회장·부회장이 제9조에서 규정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후임 **총괄사업책임자(사업단장)**가 그 직을 승계한다.

5장 조직 구성 및 역할

제12조(구성) 협의회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회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제9조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삭제>

-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의회 업무와 총회에서 위임된 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사무국은 회비의 수입내역과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무 및 전담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총무는 회장 및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협의회 회계 및 사무실무를 담당한다.

15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1. 기획위원회 : 총괄계획 수립 및 운영
2. 교육위원회 : 교육·연구계획 수립 및 운영
3. 대외협력·홍보위원회 : 대외협력·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4. 성과관리위원회 : 성과분석·공유계획 수립 및 운영

② 사무국 산하에 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의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자문위원회) 혁신지원사업의 우수한 성과창출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처,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정한다.

6장 재정

제17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학년도 사업기간으로 한다.

제18조(수입) ①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대학의 회비
2. 기타 수입

②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단, 교육, 연수, 세미나 및 행사 등의 참가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지출) ① 제18조에 의해 충당된 재정은 제5장에서 규정한 각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② 상기 협의회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회장, 사무국장, 총무, **권역별 회장**에게 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결산 보고) 회장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협의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제9조 제4호에서 규정한 감사의 결산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7장 보 칙

21조(회칙의 개정)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제13조의 운영위원회의 발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22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협의회이 정기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임기의 특칙)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그 기산점을 2022년 정기총회 개최일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집행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4조(해석) 본 회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해석에 의한다.